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임금채권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 20233호, 2024. 2. 6. 공포, 8. 7. 시행)됨에 따라,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요건을 ‘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것’과 ‘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’으로 정하고,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,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,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30 ~ 6. 10, 2024. 7. 11 ~ 7. 18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) 법 제23조의3제1

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해당 사업주의 사망·폐업으로 미회수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「민법」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(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해당 사업주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3.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
4.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

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,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3조의3(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)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.

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년을 말한다.

제24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24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자료의 제공

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(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·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가.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

나.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최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할 것

2.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(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

3.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질문(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

제25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23조의2(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)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해당 사업주의 사망·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</u> <u>1.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「민법」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(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</u> <u>2. 해당 사업주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</u> <u>3.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</u>		

	<u>변제한 경우</u> 4.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 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,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<u><신 설></u>	제23조의3(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)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.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년을 말한다.
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	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
른 근로복지공단(이하 “근로복
지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1의2. (생략)

2.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
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<단서
신설>

3. ~ 11.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1의2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. 다만,
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
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
외한다.

3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
수자료의 제공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
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
리공사에 위탁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
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(매년 1
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
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
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
대한 주소·거소 또는 재산의
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

제2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·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항으로 한정한다)</u> <u>가.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</u> <u>계가 1억원 미만일 것</u> <u>나.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최</u> <u>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</u> <u>5년 이상 경과할 것</u> <u>2.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</u> <u>(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</u> <u>우만 해당한다)</u> <u>3.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·검</u> <u>사·질문(위탁사무 처리에 필</u> <u>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</u> 제2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</u> <u>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563